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응시편의제공 확대

-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별도시험실 배정 등 편의제공 사항 확대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추가 사항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기타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기관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임신부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외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추가 인정

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사유 추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경찰·소방 및 공무원 등 수험자(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다.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확대로 인정신분증 범위 확대(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추가)

라.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 종료

기존	변경 후
• 큐넷 홈페이지 • 카카오 알림톡(신청자) • ARS	• 큐넷 홈페이지 • 카카오 알림톡(신청자)

2.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모바일(App)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정기	'26. 8. 3.(월) 09:00 ~ '26. 8. 7.(금) 18:00(5일간)	'26.10.31(토)	'26.12.2(수)
	빈자리	'26. 10. 1.(목) 09:00 ~ '26. 10. 2.(금) 18:00(2일간)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3. 시험시간

가. 일반응시자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 14:40 (100분)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 16:20 (50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나.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구분	시험 과목 (과목당 40문제)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					
		1.2배 연장		1.5배 연장		1.7배 연장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1교시	2과목	09:00 까지	09:30-11:30 (120분)	09:00 까지	09:30-12:00 (150분)	09:00 까지	09:30-12:20 (170분)
2차 1교시	2과목	12:50 까지	13:10-15:10 (120분)	12:50 까지	13:10-15:40 (150분)	13:00 까지	13:10-16:00 (170분)
2차 2교시	1과목	15:30 까지	15:40-16:40 (60분)	16:00 까지	16:10-17:25 (75분)	16:20 까지	16:30-17:55 (85분)

※ 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 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 동시응시 시간연장자의 2차 시작시간과 동일 시작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5%내외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중개실무	70%내외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30%내외 30%내외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30%내외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26.10.31)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5.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6.10.30)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합격자발표일('26.12.2)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7.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5년 제3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7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8.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또는 모바일 큐넷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같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 기 간 : 2026. 8. 3.(월) 09:00 ~ 2026. 8. 7.(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6. 10. 1.(월) 09:00 ~ 10. 2.(화) 18:00 [2일간,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또는 큐넷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cm),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번호 1644-8000)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02	2024-1718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60
서울강남지사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2 15층	02	2161-9174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2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22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53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4
경남서부지사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055	791-0735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0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8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번호 1644-8000)	
경북서부지사	3937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054	713-3022
경인지역본부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0
인천지사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1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21 해인프라자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031	615-9008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	719-0844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8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4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5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8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전북서부지사	54098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풍산빌딩 2층	063	731-55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4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44
세종지사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044	410-8022
충북북부지사	27502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 3~4층	043	722-4321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쿠팡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1가지 방법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26. 8. 3. ~ '26. 8. 7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처리
'26. 8. 8. ~ '26. 8. 14.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26. 8. 15. ~ '26. 10. 21.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사후환불 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사후환불 (시험일 이후 환불 가능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 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 편의제공 증빙서류 업로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지체장애인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종별 및 등급 표기 필요) 제출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신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2.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위 서류제출 배변장애 및 임신부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 편의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 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 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 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3) 하지(장애 정도 구분 없음, 척추 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4) 복합장애 [상지 + 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 ②, ③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④, ③+④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심장·정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 ②, 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횟수 및 시간) 없음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 ⑤호 중 하나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 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시간 산정 방법 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시각장애 경증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 필기(답) 시험 적용 시)
 ⇒ 시각장애 경증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5}=90분]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60분*0.5)=30분] = 120분

※ 제출 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9.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 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 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10.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11.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2. 2027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1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7. 8. 2. ~ 8. 6.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시행('27. 10. 30. 예정)

1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바일 신분증) ①모바일 주민등록증, ②모바일 운전면허증, ③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①,②,③ 인정발급처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④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인정발급처 : 모바일 신분증앱), ⑤ 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월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확인)) 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월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기간 만료 여권 인정 가능),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 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 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 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포기 없이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퇴실전 답안까지는 인정, 다음교시 응시 가능)

5.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6.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 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 시험 중 적발 시 2차 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2.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장치(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스마트안경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신체에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1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객관식 5지 선택형)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4.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 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17.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23.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중개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첫 번째 약속은 청렴입니다.